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나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1. 관용차량
2. 언론기관 표지 부착차량
3. 구청, 공단 주관 각종행사, 교육 강좌 및 공무를 목적으로 내방한 차량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방문센터확인인 등 방문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무료시간을 제외하고 방문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5분 추가 시 250원씩 가산하여 징수하되, 이 경우에도 방문센터장의 사전확인이 있을 경우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국회의원, 시·구의원 및 외부인사 등의 회의참석 차량
5. 운영 중인 프로그램 외부 강사의 차량
6. 기타 구청장, 이사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7. 긴급차량 (소방·경찰·의료 업무관련 차량)
8.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제5조(주차요금) ①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운영시간 내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시간까지 무료로 하고 이후 5분 추가시 250원씩 가산하되, 1일 주차요금은 최대 30,000원으로 한다.

1. 30분(1구획)까지 무료
2. 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 강좌당 3시간 무료, 연속되는 프로그램 개수에 따라 1시간씩 추가 무료
3. 체육센터 대관 승인차량 대관시간 무료(5대 한정)

② 구청장은 주차수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의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 제74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전기자동차”는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증 소지자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⑥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증명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 ⑦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 ⑧ 2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⑨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주차장 이용자는 차량 입차 시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입차하고,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 무인정산시스템을 통해 정산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인 정산할 수 있다.
- 2. 결제는 신용카드로 한다.
- 3. 민원인이 방문한 센터에서는 주차장 이용 민원인이 주차요금 면제를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8조(징수된 요금관리) 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납부한다.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키며, 이 경우 소유자가 견인료와 보관료 등의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 ② 관리자는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 후 이동명령서를 발급하여 당해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킨다.
- ③ 차량소유주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 관리·운영) ① 관리자는 별표1에 따른 이용자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입·출차 관리, 요금정산 등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주차장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 2. 차량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주차장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을 금한다.

제13조(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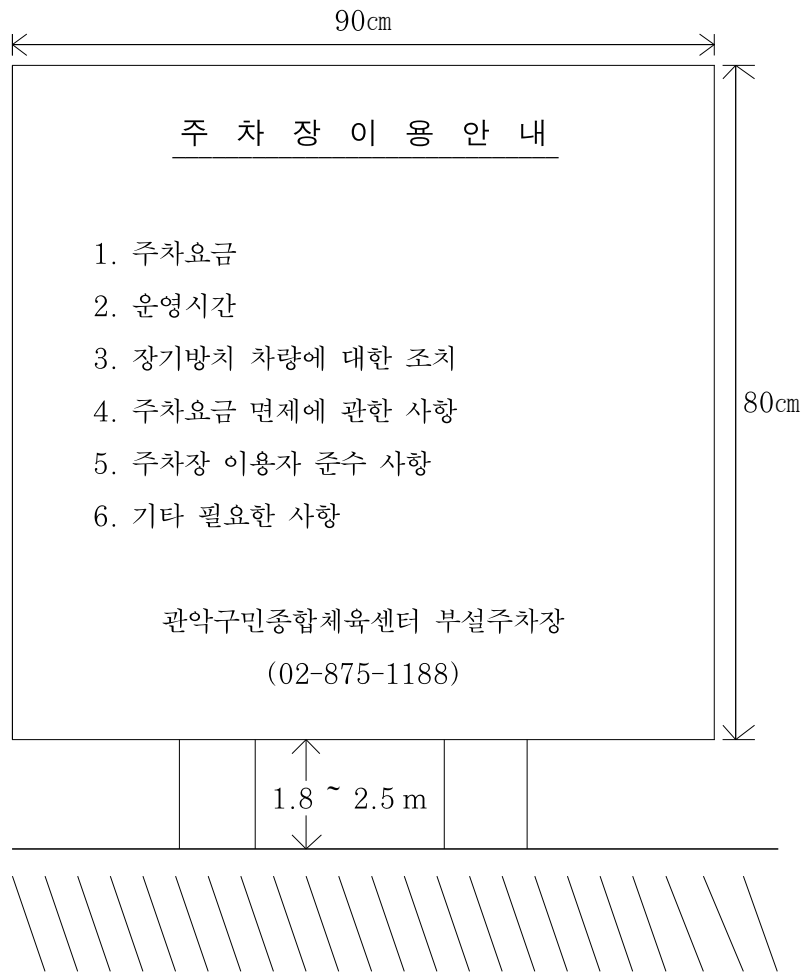
- 1. 이용자가 주차장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시킬 때
- 3.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 4.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기타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등

제14조(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주차장 이용 안내문



* 규격 및 설치위치는 적절하게 조정 가능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의뢰서

| | |
|------------------------|---|
| 방문 센터명 |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
| 확 인 자 | 담당직원 : (인) |
| 차 량 번 호 | |
| 방 문 일 시 | 년 월 일 (:) |
| 면 제 사 유 (해당번호에 V체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 자치구 등 관용차량 2. 언론기관 취재 3. 각종행사, 교육 강좌 및 공무 목적 차량 4. 외부인사 등의 회의참석 차량 5. 민원, 신규접수 등 방문차량 6. 기타 구청장, 이사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 비고 | |
|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장 귀하 | |

..... 절 취 선

주차요금 면제의뢰서(보관용)

| | |
|---------|-------------|
| 방문 센터명 |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
| 확 인 자 | 담당직원 : (인) |
| 차 량 번 호 | |
| 방 문 일 시 | 년 월 일 (:) |
| 방 문 사 유 | |

[별지 제2호 서식]

방치차량 조치보고서

(NO.)

차 량 번 호 :

입 차 시 간 : 년 월 일 (시 분)

72시간경과시점 : 년 월 일 (시 분)

위 차량은 72시간 이상 무단방치 하였으므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라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주차증영수증
첨 부 란

년 월 일

근무자 : (서명 또는 인)

| | | | |
|---|----|-----|----|
| 결 | 담당 | 센터장 | 팀장 |
| 재 | | | |

-----절-----취-----선-----

NO.

이 동 명 령 서

아래 차량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에서 72시간 이상 무단방치하였으므로 귀 견인보관소에 이동·보관을 의뢰합니다.

차 량 번 호 :

입 차 시 간 : 년 월 일 (시 분)

이동 명령 시간 : 년 월 일 (시 분)

72시간경과시점 : 년 월 일 (시 분)

받아야할주차요금 : 원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 인